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8, pp.345-394
<https://doi.org/10.29212/mh.2018..108.10>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초기 수성군(守城軍)에 관한 연구

김정웅*

1. 머리말
2. 수성군의 설치와 변화
3. 수성군의 운용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 개국 후 군사제도의 정비는 주로 중앙군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이는 고려말 대부분의 군사력이 사병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체제를 조기에 갖추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상대적으로 개편이 더디었던 지방군은 고려말부터 이어져 오던 지방군이 유지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고려시대의 지방군인

* 육군대령, 제53보병사단,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현군(州縣軍)¹⁾과 주진군(州鎭軍)²⁾은 사라지고 고려말 지방 군사력은 대원관계에서 자주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군사력이 필요했던 양계 지역에는 익군(翼軍)³⁾이 운영되고 있었고, 남쪽지역에는 육수군(陸守軍)과 기선군(騎船軍)이 있었지만 올바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속히 지방군의 정비 가 필요한 상태였다.

조선 개국 후 지방군은 중앙군과 달리 고려의 유제를 기초로 하여 정비되기 어려웠다. 북방 양계지역에는 익군 조직이 조선 건국 후에도 유지되었지만, 하삼도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새로운 군사조직을 갖추어야할 상황이었다. 이에 태조 6년(1397), 풍해도⁴⁾와 하삼도지역 등에 진(鎭)을 설치하는 설진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진을 중심으로 한 지방군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⁵⁾

1) 고려시대 이군(二軍)·육위(六衛)의 부병(府兵) 외에 각 주(州)·현(縣)에 주둔하던 지방군
2) 국경지대인 북계와 동계에는 각기 안동도호부와 그 밑에 주·진 중심의 행정조직이 짜여져 있었는데, 이곳에 주둔한 군대가 주진군이었다.

3) 고려 충렬왕 1년(1274), 제1차 여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 때 원의 익군 체제를 도입해 중군(中軍)·좌군(左軍)·우군(右軍) 등의 3군을 조직했던 것이 익군조직의 시초이며, 공민왕 즉위 후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전개하면서 양계지역에서 주로 운영되었던 군사조직으로 농민으로 구성했던 상비적인 부대이며, 조선 초 평안도·함길도에서 군익도 체제(軍翼道體制)를 편성할 때 주력부대이다.

4) 풍해도는 오늘날의 황해도로 보면 되고, 이 지역은 고려 성종 14년(995)에 전국을 10도로 나눌 때 경기지역과 함께 관내도(關內道)에 속하게 되었고, 현종 9년(1018)에 관내도를 양광도(楊廣道)·서해도(西海道)로 양분하면서 서해도로 되었고, 문종 23년(1069) 경기지역을 확장할 때 양광도·교주도(交州道)·서해도의 일부를 경기에 포함시켰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 4년(1395)에 풍천(豐川)과 해주의 이름을 따서 풍해도(豐海道)로 되었다. 태종 17년(1417)에 황주(黃州)와 해주의 이름을 따서 황해도로 개칭되었다.

5) 『태조실록』 권 11, 태조 6년 5월 21일 임신.

각도의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과하고 각진(各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어 소속인 부군 고을[州]의 병마를 거느려 수어(守禦)에 대비하고, 도관찰사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게 하였다. 경상도는 4진(鎭)인데, 합포(合浦)·강주(江州)·영해(寧海)·동래(東萊)이고, 전라도의 4진은 목포(木浦)·조양(兆陽)·옥구(沃溝)·흥덕(興德)이고, 충청도의 3진은 순성(尊城)·남포(藍浦)·이산(伊山)이고, 풍해도(豐海道)의 2진은 풍주(豐州)·옹진(甕津)이고, 강원도의 2진은 삼척(三陟)·간성(杆城)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육수군에는 지역별로 영진군, 수성군, 수호군, 잡색군 등의 다양한 병종이 편성되었으며, 여러 차례 군제개편을 거치면서 정군, 정병으로 합속되고 영진군과 정병의 체제로, 그리고 정병으로 단일화되어 지방군은 선군과 정병의 양대 체제로 정착되었다.

그동안 조선전기 지방군 연구는 지방군 정비과정이나 특정지역의 군사제도와 관련된 내용⁶⁾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윤훈표는 「조선 개국초 지방군 운용체계의 구축과 그 개편」에서 조선왕조 집권의 틀이라 할 수 있는 『조선경국전』⁷⁾과 『경제육전』⁸⁾, 『속육전』⁹⁾을 통하여 조선 개국 후 지방군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경국전』에서는 지방군은 육수병과 기선병이 있으며, 지방에서도 군기를 정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제작소가 있고 지방군의 주기적인 점검을 농한기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경제육전』은 『조선경국전』을 바탕으로 보완, 발간되면서 기선군의 개선과 함께 사병혁과 등이 이루어진 군제개편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¹⁰⁾

6) 오종록,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체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이논문은 북방의 동북면과 서북면 지역의 익군제도를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7) 태조 3년(1394) 3월에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이 편찬한 사찬 법전으로, 조선의 건국 대강을 그리고 있으며 조선 법전 편찬의 시조가 된다.

8) 『경제원육전(經濟元六典)』 또는 『원육전(元六典)』이라고도 한다. 태조 6년(1397) 12월 26일 공포, 시행되었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기관으로서 법령의 정비와 법전 편찬업무를 관장하던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에서 영의정 조준(趙浚)의 책임 아래 편찬된 것이다. 고려 우왕 14년(1388)부터 태조 6년(1397)까지의 법령과 장차 시행할 법령을 수집해 분류, 편집하였다. 체재와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왕조실록』에 직접, 간접으로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육전(六典)과 각 전마다 여러 강목(綱目)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 조선시대 통일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공포한 뒤, 태종 때의 『경제육전속전(經濟六典續典)』, 세종 때의 『신속육전(新續六典)』과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을 통칭해 부르는 명칭 『경제육전』을 시행한 뒤에도 새로운 법령이 쌓이자 이를 법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태종 7년(1407) 8월에 속육전수찬소(續六典修撰所)를 설치하였다. 하륜(河崙)과 이직(李穰) 등이 1412년 4월에 『경제육전속집상절(經濟六典續集詳節)』을 편찬, 수정한 뒤에 1413년 2월 『속육전』으로 공포, 시행하였다.

10) 이외 주로 지방군의 한 부류인 수군과 관련된 연구는 윤훈표, 『여말선초 군제개혁

민현구는 「진관체제의 확립과 조선초기 지방군제의 성립」을 통해 지방군의 지휘체계 정비과정과 지방군인 영진군, 수성군과 수호군, 잡색군(雜色軍)¹¹⁾의 편성과 역할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루면서 지방군의 진관체제로의 정비과정을 고찰하였다.¹²⁾

오종록은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체제」에서 양계지역의 군사지휘계통 및 진관체제, 그리고 양계지역에 복무하는 병종인 익군, 시위패와 정병, 양계갑사 등에 대해 양계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기초하여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조선전기의 지방군에 대한 연구를 종합한 것으로 육군군사연구소에서 편찬한 『한국군사사: 조선전기편』 등이 있다.¹³⁾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군사력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분류하여 중앙군은 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력으로 기능하다 유사시 국방력으로 활용되었고, 지방군의 기능은 1차적으로 국방에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방군제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군사조직과 지휘체계는 토착 지배구조 및 중앙의 지방통치제도가 함께 어울려 작동하고 있으며, 군사조직과 지휘체계의 변화는 토착 지배구조와 지방통치제도의 변화와 상호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¹⁴⁾

지방군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조선초기 지방군에 편성되었던 영진군과 수성군, 수호군, 잡색군의 병종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였는지, 어떠한 부류의 군정들이 지방군 병종에 입역하였는지에

연구」, 해안, 2000.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의 진관체제로의 개편」, 『조선초기 수군 제도사』, 민중문화사, 1991. 이재룡, 「조선초기의 수군」, 『한국사연구』 5, 1970 등이 있다.

11) 정규의 군인이나 그 봉족(奉足)이 되지 않는 자들 가운데 현직 관리와 전함(前衛) 3품 이상자를 제외한 향리·관노(官奴)·공사천구(公私賤口)·목자(牧子) 향교의 생도 등 군역 이외의 국역(國役)을 지거나 아예 국역을 지지 않는 자들을 망라하였다. 세조 이후 전국을 군사조직으로 묶은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완성되면서 군액(軍額)을 파악할 때조차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유명무실화되었다.

12) 민현구의 연구는 『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1장3절에 원문이 실렸으며 조선전기의 지방군의 대강을 고찰한 논문이다.

13) 윤훈표 외, 『한국군사사: 조선전기편』, 육군군사연구소, 2012.

14) 오종록, 전제서, 1~2쪽 참조

대한 세부적인 고찰은 미흡하다. 따라서 이러한 병종들이 어떻게 편성 되었으며 어떤 임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었는지 그리고 임무수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평시부터 해왔는지, 실제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였는 지에 대한 세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군의 한 병종인 수성군이 어떻게 설치되고 변화 되었으며, 어떤 군정들이 수성군에 편성되고 관리되었는지, 그리고 군사적인 임무는 무엇이고, 어떤 지휘체계 하에서 운영되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수성군은 『조선왕조실록』 외에는 사료가 제한되긴 하지만 수성군 관련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여, 당시의 지방군 병종과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수성군의 설치와 그 현황, 변화 과정을 알아보고, 수성군 입역과 봉족운용, 훈련체계와 군사적 임무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찰하여 조선초기 수성군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2. 수성군의 설치와 변화

가. 수성군의 설치와 현황

고려시대 지방군은 일반적으로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편성되어 운영 되었으나 이들의 역할은 미미하였으며, 외침이 있을 때나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중앙군이 파견되어 이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고려 지방군은 대몽 항쟁기간에 중앙군이 권력을 수호하는 동안 곳곳에서 몽고군에 저항하면서 그 빛을 발했고 원에 복속된 이후에는 한동안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고려말에 접어들면서 양계지역에서는 원과의 항쟁에 남쪽 연안지역에서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군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의 주요 거점별로 지방군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조선이 개국하면서 그 맥이 이어졌다, 고려말 지방의 주요 거점에서 방수(防戍)임무를 수행하였던 군사를 일반적으로 진수군(鎭守軍)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진수군은 육수군(陸守軍)과 기선군(騎船軍)으로 나누어졌고, 수성군은 바로 육수군에서 비롯된 병종이다.¹⁵⁾

조선초기 지방군은 태조 6년(1397)의 설진(設鎭)조치를 통해 지방 요해처(要害處)에 진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시작하였고, 수성군도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진이 설치되면서 진(鎭)에 편성되는 군사를 진군, 진속군이라 하였고, 태조 7년(1398)에 각 도에 도절제사영(都節制使營)이 설치되면서 영에 편성되는 군사를 영속군, 또는 영군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진군과 영군을 통합하여 영진군이라 통칭하였다.¹⁶⁾ 수성군도 지방군의 한 병종이므로 이런 진군과 영군이 편성되는 시기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수성군 명칭이 조선초기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태조 7년(1398)에 개성유후사¹⁷⁾의 수성군관¹⁸⁾을 340명으로 정한다는 내용에서이다.¹⁹⁾ 이는 태조 6년(1397), 설진조치 이후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군이 편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수성군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때의 일로 보인다. 수성군이 다시 언급되는 것은 봉족(奉足)²⁰⁾ 관련 규정을

15) 민현구 「진관체제의 확립과 조선초기 지방군제의 성립」,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1982. 187~191쪽 참조.

16) 이현수, 『조선초기 군역제도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79쪽 참조.

17) 조선 개국후 태조 3년(1394)에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이듬해 개성을 다스리던 관아인 개성부(開城府)를 개성유후사로 고쳤다.

18) 이현수, 전계서, 103쪽. 조선초기에는 일반군사를 군관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고 하며, 이유는 이들이 영직(影職)으로서 관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4월 26일 임인.

20) 조선초기 국역(國役) 편성의 기본 조직으로 정정(正丁 :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을 돕게 하던 제도에서 정정(正丁) 1인에게 조정(助丁)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재력(財力)을 내게 하여 정정이 국역을 입역(立役)하는 데 이때 조정을 봉족이라 불렀다. 국역을 지는 정정은 이러한 봉족의 도움을 받고 부과된 역을 담당하였다.

정립하면서인데, 태종 4년(1404), 조선 개국 후 백성들에게 군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직역(職役)을 부여하고, 봉족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성군은 일수양반(日守兩班)²¹⁾과 함께 3, 4결 이하의 사람만으로 쓰고 5, 6결 이상의 사람은 쓰지 말되, 봉족은 주지 않는 직역으로 정리되었다.²²⁾ 이때 수성군이 조선시대의 군역으로, 그리고 지방군의 한 병종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수성군이 설치되면서 수성군의 군역을 수행할 인원이 새로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지방군이 개편되고 군역제도도 동시에 정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군정들이 정속(定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초기 영진군, 수성군 등 다양한 병종이 지방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입속하였던 군정들은 시위패(侍衛牌)²³⁾에 속했던 일부 군정들이었다. 왜냐하면 정종 2년(1400) 사병이 혁파된 이후 사병의 중추세력이었던 시위패 대신 새로 편성된 중앙군이 시위와 숙위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소요가 감소함에 따라 일부는 지방군으로 윤대하기도 하고, 각 도의 시위패와 진속군을 병합하여 윤차로 번상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군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종 12년(1412), 각도의 시위군을 지방군인 선군으로 윤대(輪對)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기도 하였고,²⁴⁾

21) 지방의 관아(官衙)나 역에서 잡무에 종사하던 자로 관일수(官日守)와 역일수(驛日守)로 구분되었는데 각 관과 역의 대소에 따라 그 정액이 고정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府)에 44인, 대도호부에 40인, 목에 40인, 도호부에 36인, 군에 32인, 현에 28인’이라 하여 전국 330여 개에 달하는 지방관아에 총 1만여 인의 관일수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대로에 20인, 중로에 15인, 소로에 10인’이라 하여 전국 540여 개 역참에는 약 6,000여 인의 역일수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양인신분으로 충당되었는데 그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이나 역 근처에 거주하는 한역인(閑役人)이나 향리 등으로도 충원되었다.

22)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5월 23일 계해.

23) 일명 시위군이라고도 하였다. 왜구의 출몰과 전란이 잦은 고려 말 각 도의 절제사를 겸임하고 있던 조정 중신들은 통제력이 약화된 정부를 대신하여 직접 군대를 징발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기 휘하의 사병으로 이용하기도 하였고, 상경시켜 자신의 거처를 시위케 하기도 하였으므로 절제사의 사병이라 하기도 하였다. 시위패라는 이름은 이때 붙여진 것이며 사병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중앙 국방력의 일부를 구성하는 군대였다.

24)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1월 25일 경술.

태종 13년(1413)에는 각 도의 시위군을 진속군에 합하여 윤차(輪差)로 번상하게 하였는데²⁵⁾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위패의 군정들은 자연스럽게 지방군으로 흡수되었다. 경상도 관찰사가 시위군과 기선군의 군정수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시위군의 반 정도의 인원이 선군으로 정속한 것이 보인다.

시위군(侍衛軍)의 원수(員數) 5천 9백 89명내에서 시위(侍衛)에 환속한 것이 3천 21명이고 기선군(騎船軍)으로 정속(定屬)한 것이 2천 8백 50명인데 새로 지은 병선 50척에 나누어 태웠습니다.²⁶⁾

이를 통해 볼 때 전국 각지의 시위패들은 중앙군의 병종에 편성되는 인원도 있었지만, 지방군인 선군이나 영진군으로 정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들 중 일부는 수성군으로 정속되었을 것이다.

수성군이 지방 양인농민의 군역으로 정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종 3년(1421), 도성수축도감(都城築造都監)²⁷⁾이 전국의 성 보수방법에 대한 계를 올리는 내용에서이다. 주요지역 방어를 위해 축성하는 과정에 수성군과 갑사, 별패(別牌)²⁸⁾, 시위패, 수군, 진군, 익정군, 첨발(簽發)²⁹⁾, 봉족군, 잡색군을 제외하고 성을 쌓고 있음을 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³⁰⁾ 이 무렵 수성군은 다른 병종들과 함께 군역의 하나로, 요역에서 제외되는 신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성군이 어느 지역에서부터 편성되었는지를 언급한 사료는 없지만,

25)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3월 3일 임오.

26)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4월 11일 을축.

27) 조선 건국 직후 도성을 쌓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관청으로 태조 4년(1395) 9월 경복궁과 종묘·사직의 공사가 마무리되자, 도성축조령과 함께 도성축조도감이 설치되었다.

28) 조선 초기 임금과 대신들의 행차의 경호 경비를 담당하던 특수 부대 성격을 지닌 군사.

29) 한자어로 군사나 장정을 징발함을 말하는 것으로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 징발한 군사를 말함.

30) 『세종실록』 권13, 세종 3년 10월 29일 무오.

먼저 북방지역의 경우를 보면 태종 18년(1418), 함길도 관찰사가 무비 연습과 관련된 내용을 올리면서, 각 진(鎭)의 군관과 각 고을의 수성군, 각 포(浦)의 기선사관에게 편전(片箭)을 연습시킬 것을 고하고 있다.³¹⁾ 이를 볼 때 북방지역에서는 관방지역인 각 진이 아닌 고을부터 편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종 7년(1425), 이조(吏曹)에서 올린 함길도 감사의 관문 내용을 보면, 함길도의 경우 군익도(軍翼道)³²⁾의 중익에 수성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다.³³⁾ 이는 중익이 도절제사의 직속으로 도절제사, 병조에 이르는 보고체계의 중심에 있었고 중요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익 보장 차원에서 수성군을 중익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삼도 지역의 경우 세종 1년(1419), 대마도를 정벌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경상, 전라, 충청의 수성군 영속을 동원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 남방의 하삼도 지역의 영(營)에도 수성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³⁴⁾ 세종 3년(1421), 병조에서 진법(陣法)연습을 시행하기를 청하는 계에서 각 영과 진에 속한 수성군을 참가시킬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³⁵⁾ 이 시기에는 각 영과 진에 수성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32) 군익도는 지방의 각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군익도는 다시 중, 좌, 우익으로 편성하여 인근의 여러고을을 각 익에 소속시켜 만든 하나의 군사단위이다.

33)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7월 20일 경신.

“도내의 중좌익에 속하는 각 고을과 그 군사의 정수를 마감하였는데 함흥도의 중익 함흥은 별패, 정군, 수성군, 잡색군을 아울러 모두 1천7백32명이고, 좌익 정평은 4백75명이고, 예원은 1백31명이고, 우익 북청은 5백60명입니다. 길주도의 중익 길주는 별패, 정군, 수성군, 잡색군을 아울러 8백19명이고, 좌익 단천은 4백5명이고, 갑산은 별패가 1백80명이고, 우익 경원은 4백48명이고, 경성은 3백4명입니다. 화주도의 중익 화주는 별패, 정군, 수성, 잡색군을 아울러 9백2명이고, 좌익 안변은 4백48명이고, 의천은 1백22명이고, 우익 고원은 1백42명이고, 문천은 1백59명이고, 웅진은 별패 1백19명입니다.

34)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14일 무오.

35)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세종 6년(1424)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각 지역별 수성군의 편성상황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수성군 편성 상황을 살펴보면, 각 도(道)의 군정속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방수 임무를 수행하는 각 진과 도절제사영에 편성된 것도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도별 군정을 기술하면서 먼저 도전체의 군정속에 수성군 현황을 언급하고 각 영과 진에 속한 수성군을 별도로 기술한 것은 도의 수령이 군사지휘권이 없는 행정관료인 반면 영과 진의 지휘관인 도절제사와 첨절제사는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지역방어를 책임지는 군사관료로서 서로 소속을 달리하고 있어 이들 군정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볼 때 수성군의 편성 특징은 첫째, 북방의 양계지역에서는 관방지역인 군익도나 구자 등의 지역에 수성군이 편성되지 않았고 부, 목, 도호부의 행정구역에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남방지역의 경우 도절제사 영이 설치된 지역과 진이 설치된 지역에 주로 수성군이 편성되었다. 셋째, 도 전체의 군정 수에서는 강원도 11명, 평안도 789명, 함길도 516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삼도에는 도 군정에는 수성군이 없고 북방지역에는 적지 않은 수성군이 도(道)군정에 편성되어 이 지역에서는 필요시 수성군을 집중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각 영과 진의 수성군 군액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태조 6년(1397), 진을 설치할 당시에 15개였던 진이 『세종실록지리지』가 발간되던 시기에는 17개로 늘어났고, 각 진의 지방군에는 수성군으로부터 방패군까지 상이하게 병종이 편성되어 있다.

<표 1> 각 영진의 지방군 군액

구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				
	도절제사영	울산진	영일진	동래진	영해진	사천진	도절제사영	옥구진	부안진	무정진	조양진	도절제사영	남포진	순성진	도절제사영	풍천진	장연진	웅진진	강령진	도절제사영	강릉진	간성진
수성군	438	40	80	80	80	49	51					207	51	50		80	80	80	80			
정군 [^] *군관 ^v	*	*	*	*	*	*	498	300	300	300	300	500										
유방군												63	61		300	300	362	400				
진속군												300	300									
방패군																60	48	68	60			

도별로 진에 편성된 지방군의 병종이 다른 이유는 아직도 지방군의 군제개편이 진행 중인 과정에 있어 통일된 편성을 보이기 어려웠거나, 각 지방마다 왜구의 위협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다르고, 지방군 운영전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왜구를 먼저 해상에서 수군으로 격멸하고, 잔존하여 지상에 상륙한 소수의 왜구만을 상대할 것인가, 또는 왜구의 상륙을 허용한 다음 조선군이 능숙한 기병전술로 격파할 것인가, 또는 보병으로 접근전을 펼칠 것인가 등의 지역 단위 전술에 따른 병종 운용의 모습이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7개 진에서 수성군이 편성된 곳은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 3개 지역의 11개 진이다. 도절제사영이 설치된 지역에 수성군이 편성된 곳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이며 황해도 지역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

도절제사영의 영속군은 도절제사의 직할부대로서 도절제사가 직접 지휘하는 부대이므로 상대적으로 각 진보다는 도절제사 영에 수성군이 더 많이 편성되었다. 도절제사영의 수성군은 경상도는 438명, 충청도는 207명으로, 전라도의 51명에 비해서는 4~8배 많은 수의 수성군이 편성되어 있다. 도절제사영의 수성군을 제외하고 각 진에 편성된 수성군은 그 숫자가 40~80명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성군이 각 진의 주력 병종이 아니며 전투지원임무를 담당하는 병종이거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병종인 탓으로 보인다.

<표 2>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각 도의 군정 수인데 수성군이 편성된 곳은 강원도와 평안도, 함길도 세 곳이다.³⁶⁾ 전라도와 강원도의 진에는 수성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전체 군정에서 강원도의 경우, 시위군 2,276명, 선군 1,384명, 수성군 11명, 진속방패 25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도 전체의 군정에 소수지만 수성군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강원도의 도절제사영과 각 진의 군정이 기록되지 않아 정확한 영과 진의 지방군 편성을 알 수 없다.³⁷⁾ 이는 강원도 지역에 특별한 전략적인 요해지가 없었고, 외적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어서 지방군 운용과 감독에 소홀하였거나 실제로 지방군이 운용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소수의 수성군은 관아의 경비나 사령(使令)³⁸⁾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6) 이현수, 전계서, 60~62쪽, 이현수는 연구에서 “수성군이란 산이나 읍성에 배치되는 군사로 수호군은 특정지역의 경비를 하도록 배치되는 군사이나 각도별로 파악 방식이 달랐고 중앙에서 집계할 때 수성군과 수호군을 동일하게 파악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각 고을의 군정의 합과 각 도별 군정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군정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거나 군정의 구분을 서로 달리한 데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37) 『세종실록지리지』의 강원도편에서는 태조 6년에 진을 두었으나 진에 유방군이 없어 일이 있으면 시위패로 충당한다고 되어있고, 수군은 수군만호 수어처가 6개소가 있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강원도는 수군 중심의 연안방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8)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심부름 등 천한 일을 맡고, 군관(軍官)·포교(捕校) 밑에 있으면서 죄인에게 곤장을 치는 등 하는 일이 여러 가지여서, 그 일에 따라 조례(曹隸)·문졸(門卒)·일수(日守)·나장(羅將)·군노(軍奴) 등으로 달리 불렸다.

<표 2> 각 도의 군정수

구 분	수성군	수호군	영진군	익군	(기)선군	진속방패	시위군
경기도					3,892		1,713
경상도			3,876		15,934		2,630
전라도			2,424		11,793		1,167
충청도		248	1,766		7,858		1,974
강원도	11				1,384	25	2,276
황해도			2,736		3,997		2,294
평안도	789			14,053	3,490		2,878
함길도	516			4,472	969		

전라도는 수성군이 각 진이나 도 전체군정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성군은 도절제사영에만 51명이 편성되어 있다. 도절제사영의 수성군은 소수로 편성되어 시설경계나 사령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도 전체 군정은 시위군이 1,167명, 영진군이 2,424명, 기선군이 11,793명으로, 기선군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라도 지역의 주력은 수군이였다. 이는 왜구의 침입을 해상에서 격멸한다는 개념으로 지방군을 수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함길도와 평안도에서는 수성군이 전체군정에서 함길도의 경우 516명, 평안도는 789명이다. 타 지역에 비해 도 전체 군정에 수성군이 비교적 많은 인원이 편성되어 있고, 규모가 있어 병종 단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익군이 지방군 주력이었고, 기타 병종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성군도 익군의 병종의 보조적인 임무나 사령 역할, 시설경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다 유사시에는 전투임무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표 3>은 『세종실록지리지』의 북방 양계지역의 행정구역인 부, 목과 도호부에 편성된 지방군 군액 현황으로, 북방지역에는 하삼도와 달리 군익도와 구자 등의 관방(關防)지역에는 수성군 편성이 보이지 않는 반면, 행정구역인 부, 목과 도호부에는 최소 20명에서 최대 145

명의 수성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에 편성된 수성군이 상대적으로 소수로 그 규모가 작은 것은 전투 임무를 염두에 둔 편성이기 보다는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된 관아에서 시설의 경계나 사령 임무를 수행하거나, 지역의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 북방지역의 부, 목, 도호부의 지방군 군액

구 분		수 성 군	익 군	선 군	영 진 군	갑 사	시 위 군
평안도	평양부	145	2,951	437			736
	안주목	61	477	194			150
	성천도호부	21	392	155			187
	숙천도호부	32	275	139			122
	의주목	21	336				
	정주목	20	402	131			
	삭주도호부	30	203	20			
	영변대도호부	24	532	208			50
	강계도호부	30	436				
함길도	함흥부	76	660				150
	정평도호부	28	298				120
	북청도호부	33	509				67
	영흥대도호부	64	640				121
	안변도호부	49	259				150
	길주목	50	507				
	경원도호부(길주목)	58	301				
	경원도호부				629	133	
	회녕도호부				695	25	
	종성도호부				724	12	
	은성도호부				686	25	
	경흥도호부				312		90
	부령도호부		362				

목과 도호부, 부 및 군에는 익군, 시위군과 선군이 주력이고, 수성군은 소수의 병력만이 편성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수령들이 수성군을 시설 경계나 고을의 치안유지, 관아의 사령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다

유사시에는 전투임무에 투입하는 전력으로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수성군의 변화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지방군은 시위패가 영진군에 합속되고, 영진군이 지방군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³⁹⁾ 수성군의 편성체계도 일부 변화를 겪게 된다. 남방지역에서는 행정구역인 부나 군에도 수성군이 편성되었고,⁴⁰⁾ 북방지역에는 관방체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세종 14년(1432)부터 본격적으로 진과 구자가 증설되기 시작하였는데⁴¹⁾ 이때 새로이 진을 편성하면서 각 진에 수성군이 편성되는 사례가 나타났다.⁴²⁾

세조 1년(1455), 병조에서 각도의 내지에도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39) 『세조실록』 권5, 세조 2년 12월 24일 기미.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염포(鹽浦)·부산포(富山浦)·제포(薺浦)의 왜선(倭船)이 처음 정박(碇泊)하는 곳과, 항상 살고 있는 왜인(倭人)이 거주하는 곳의 방수(防戍)가 가장 긴급한데, 옆 근처에 있는 도절제사 진(都節制使鎭)과 동래(東萊)·웅천(熊川)의 진(鎭)에 방수하는 군사가 적고 약하니, 당도(當道)의 번상시위패(番上侍衛牌) 안에서 3백 명을 뽑아내어 삼진(三鎭)에 나누어 방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 번상시위패가 점차 진군으로 입속하게 되었다.

40)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6월 23일 임진.

병조에서 “전라도 순천부에 충청도 비인현의 예에 따라 본부 수성군 33명으로 군관을 적당히 늘리고 각 고을에 거주하는 신백정과 한산인 등을 뽑아서 번을 나누어 성을 지키게 하소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성군의 편성이 영과 진에서 부나 현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41) 오중록, 「조선초기의 국방관」, 『진단학보』 86, 1998. 149쪽 참조.

42)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6월 14일 신축.

병조에서 “석막, 상평에 돌성을 축조하여 명칭을 영북진으로 하고 절제사를 파견하며 전의 경성에 있는 정군, 수성군과 용성의 유방군을 그곳의 소속으로 정하고 진에 속하는 노비는 …(중략)… 경성군은 승격시켜 도호부로 하고 판관을 두며 영북진 절제사가 도호부사를 겸임하게 하고 판관은 계속해서 옛 경성에 있으면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전심 …(중략)… 용성에 돌성을 쌓고 매년 봄, 가을에 도절제사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방어에 나아가서 성원하게 하소서” 하고 있어 북방지역에 진을 신설하면서 수성군을 편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을을 익에 분속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행하면서 감사와 별시위(別侍衛),⁴³⁾ 총통위(銃筒衛), 근장(近仗),⁴⁴⁾ 섭육십(攝六十),⁴⁵⁾ 방패, 별군의 시위와 제영과 제포, 제진의 군사 등 모든 병력을 익에 속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때 수성군도 익에 속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⁴⁶⁾ 이는 북방의 군익도 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진관체제로 정비해나가는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성군도 군익도의 한 병종으로 편성되었다.

세조 4년(1458), 병조에서 주진-거진-제진의 체제가 정립되면서 기존의 각 익에 소속시켰던 군사를 진에 소속시키는 조치를 단행한다. 이때 수성군과 잡색군 등 지방의 모든 군사들을 각 진에 소속되도록 하면서 수성군도 제진의 예하군사로 편성하였다.⁴⁷⁾

세조 5년(1459), 병조에서 평안도와 함길도는 정군이라 일컬고, 나머지 도에서는 시위패라 일컬으며, 정군을 통솔하는 사람은 백호, 천호라 일컬고, 시위패를 통솔하는 사람은 총패라 일컬으니 명호가 다르다고 하여 앞으로 정군과 시위패를 모두 정병으로 호칭하도록 하였다.⁴⁸⁾ 이는 지방군에 입속하는 군정에 대한 명칭을 통일시키는 조치로, 명칭만 상이할 뿐, 이들의 신분이나 수행하는 임무가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통일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닌 정군과 시위패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개선하

43) 조선 전기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 : 龍驤衛)에 속했던 중앙군 병종으로 태종 즉위년(1400)에 고려 말 이래의 왕의 시위와 숙위를 담당했던 성중관(成衆官)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한 것으로 국왕의 친위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위병(衛兵)으로 바뀌었다.

44) 조선전기 대궐의 숙위와 왕의 행차시 시위를 담당하던 병조(兵曹) 소속의 군사

45) 조선전기 섭대장(攝隊長) 20인과 섭대부(攝隊副) 40인으로 60인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섭육십이라고 하며 말단 군관의 병종이다. 주로 役事에 투입되거나 임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운용되었다.

46)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11일 계미.

47)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2월 26일 을묘.

48) 『세조실록』 권18, 세조 5년 11월 1일 기묘.

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⁴⁹⁾

이때 이루어진 각 도 지방군의 개칭에도 불구하고, 수성군은 예외가 되었고, 시위패로 지방에 유방하거나 정군으로 이미 합속된 병종만이 정병으로 합칭되었다. 그러다 세조 10년(1464)에 지방군을 예전부터 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출한 진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병으로 통일하면서 수성군도 정병으로 합속되게 된다.

“여러 도(道)의 영진군(營鎭軍) 안에서 부득이 차비(差備)한 자는 옛날 그대로 진군(鎭軍)이라 칭(稱)하고, 그 나머지 군사와 수성군(守城軍)은 모두 정병(正兵)에 속하게 하여 앞서 있었던 정병(正兵)과 같이 섞어서 번(番)을 나누어, 영진(營鎭)과 경중(京中)에 차례를 돌려가면서 번상(番上)하게 하소서. 그 영진군(營鎭軍)의 수는 모두 전(前)의 수(數)에 의하여 나누어 정(定)하소서.”⁵⁰⁾

이로서 지방군의 한 병종이었던 수성군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정병이 그 기능을 이어받게 된다. 이렇게 양인 농민 출신의 군사들이 모두 정병으로 일원화되고 난 후, 정병은 시위패 계통과 영진군 계통의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누어 중앙으로 시위하는 번상정병과 지방에서 유방하는 유방정병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⁵¹⁾ 수성군에 속하였던 군정들은 지방에서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정병으로 합속되면서 유방정병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지방군이 정병으로 재편된 후 수성군은 조선초기에 존재하였던 지방군 병종의 하나로 정리되었지만, 수성군을 조선초기에만 운영된 군사로만 이야기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초기 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에도 수성군이 언급되고 있는 사료가 있기 때문

49) 정군은 부방하는 연한을 계산하여 산관직을 제수하지만, 시위패는 여러해 동안 번상하여 시위하더라도 관직이 제수되지 않고 갑사로 취재할 수 있는 기회만을 부여 하던 것을 통일하여 정병이라 하고 말이 있는 사람은 정기병, 말이 없는 사람은 정보병으로 하여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기간이 지나면 산관직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50)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9월 20일 경오.

51) 『성종실록』 권59, 성종 6년 9월 10일 병진.

이다. 『고려사절요』에 수성군이라는 군사가 언급된 사료가 있는데 이는 병종의 하나가 아니라 성을 지키는 군사를 총괄하여 일컫는 호칭으로 보인다.⁵²⁾

조선후기에도 수성군이라는 호칭은 나타나고 있다. 선조 32년(1599), 정유재란의 막바지에 광재우가 경주와 울산의 전투에 능한 사람을 뽑아 성을 지키게 하는 것을 청하는 과정에서 수성군이란 군사를 언급하고 있다.

경주와 울산의 군대는 8년 동안이나 적을 토벌하여 전투에 익숙해 있으니 정병(精兵)이 많지 않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공사천(公私賤)을 기릴 것 없이 본토의 유민(流民)을 모두 모은다면 경주와 울산 양부(兩府)에 수성군(守城軍) 2천여 명은 얻을 수 있을 터이니 이 군대로 영구히 성을 지키게 하고, 그 나머지 내지의 각 읍에서 모은 여러 계통의 잡군(雜軍) 6천여 명으로 수성군의 봉족(奉足)을 삼아 1인당 1년에 쌀 20여 두(斗)씩을 내게 하면 2천 명의 1년 양식을 지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⁵³⁾

이 사료에서는 성을 지키는 군사를 일반화하여 수성군이라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성군이 정병으로 통합되면서 그 존재가 사라졌지만 수성군이라는 명칭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다. 고려시대부터 주요 성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를 수성군이라 통칭하였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지방의 주요지역을 경계하거나 방어하는 병종을 만들면서 그러한 명칭을 부여하였고, 수성군 병종이 정파되었지만 이후에도 주요 지역을 경계하고 방어하는 군사를 통칭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성군은 조선초기 지방군의 한 병종으로 처음 하삼도 지역의 영과 진에 편성되기 시작하여 특정한 지역이나 방어시설인 성곽과 보와 같은 지역을 경계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보다 늦게 북방의

52) 『고려사절요』 권17, 高宗安孝大王 “發新興倉，賑守城軍卒及合入州縣吏民”.

53) 『선조실록』 권120, 선조 32년 12월 13일 무자.

행정구역에 편성되기 시작한 수성군은 행정구역의 치안유지, 사령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유사시 전투에 동원되는 상비전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왜구와 여진의 침입경로를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남방의 행정구역에 수성군을 편성하고, 양계지역에는 진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수성군을 편성하여 방어시설 경계와 외적의 주요 침입 경로 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병종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다 지방군 병종간의 차별을 없애고 통일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군 병종을 단일화하면서 병종으로서 수성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수성군이라는 명칭은 성을 지키는 군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수성군의 운용

가. 수성군의 관리체계

1) 입역과 봉족

조선초기 지방군 관련 사료가 부족하여 어떤 인원들이 병종별로 입역하였는지, 입역하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차츰 군제가 정비되면서 병종별로 운영체계가 정립되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병종별로 유추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수성군도 정병으로 합속되었기에 정병의 시취 규정과 번상 교대주기, 당번시의 근무방법에서 수성군의 사례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합속되기 전 수성군에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제한되기는 하지만 사료에 기초하여 수성군의 입역기준, 봉족지급, 번상근무방법, 일정기간 복무 후 거관하는 내용 등을 고찰해보면 조

선초기 수성군의 운용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부분적이긴 하지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조선초기 조정에서는 왕권강화를 위해 중앙군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중앙군 중심의 군제개혁을 먼저 단행하였고 우수한 자원을 중앙군에 우선 입역시키고자 하였다. 수성군은 지방군의 한 병종으로 중앙군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군의 타 병종에 비해서도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⁵⁴⁾ 조선초기 수성군 병종에 입역하는 인원은 어떤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인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사료는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군역이 양인의 직역인 만큼 수성군도 일반 양인이면서 지방군이라는 특성상 농민들이 주축으로 입속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예 병종이라 할 수 있는 갑사나 별시위 등과 같은 금군(禁軍)과 심지어 지방군의 타 병종에 입속하는 인원들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인원들이었다.⁵⁵⁾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세종 5년(1423), 재인⁵⁶⁾과 화척⁵⁷⁾의 칭호를 백정으로 개명하게 하면서 이들을 군역에 차정(差定)⁵⁸⁾할 때 그 가계(家計)가 풍족하고 무재(武才)가 있는 자는 시위패로 삼고, 그 다음은 수성군으로 삼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

54) 이는 세조 10년 8월 1일 양성지가 군사에 관한 일로 상서하는 가운데 진수군은 진군, 선군, 수성군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수성군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어 그 중요성과 진수군에서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다.

55) 민현구, 전계서, 191쪽 참고.

56) 재인은 법제상으로 양인이었으나 직업이 천하여 천민으로 인식되는 계층으로 주로 유기(柳器), 피물(皮物)의 제조와 도살, 수렵, 육류판매 등으로 생활을 연명하기도 하고 때로 가무 등으로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주로 창극 등의 기예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57) 화척도 법제상으로 양인이었고 재인과 마찬가지로 도살업, 유기, 피물의 제조, 수렵, 육류판매 등을 생활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은 특히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 많았고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유랑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호적에 올려 파악하려고 하거나 토지를 지급해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58) 차정은 정하여 임무를 맡긴다는 뜻으로 어떤 직책이나 품계를 부여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임.

데에 무재가 특이한 자는 도절제사로 하여금 재능을 시험하여 병조에 통보하여 다시 시험하게 한 후, 감사직에 서용하도록 하고 있다.⁵⁹⁾ 재인과 화척의 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통상 무력이 뛰어난 인원이 많음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군정인 시위패에 차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준이 떨어지는 인원은 수성군에 차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수성군은 시위패에 입속하는 인원보다는 가계나 무력에서 한 등급 떨어지는 인원으로 충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원칙은 일반 양인들에게 군역을 차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인 농민이 수성군으로 입속한다는 전제 아래 어느 정도의 계층에 속하는 인원인지를 추정해볼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수성군도 군역으로서 당번 시기에는 경제적 부양을 위해 봉족이 필요한데, 태종 4년(1404)에 봉족 관련 규정을 정립하면서 수성군과 일수양반은 3, 4결 이하의 사람만을 쓰고 5, 6결 이상의 사람은 쓰지 말되 봉족은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⁶⁰⁾ 이는 대부분의 직역자에게 기준 이하의 토지를 경작하는 인원은 봉족을 지급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봉족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에 비해 수성군의 경우 아예 봉족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3, 4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수성군으로 입속시키고 있어, 중하층 수준의 농민들 중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있는 인원들이 입속한 병종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수성군의 복무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양인 농민들로 입속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5, 6결 이상의 사람은 입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수성군은 복무에 비교적 부담이 되는 마병은 아니고, 단순한 보병 병종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성군이란 용어가 특정 지역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기병일 필요가 없고 보병이면

59) 『세종실록』 권22, 세종 5년 10월 8일 을묘.

60)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5월 23일 계해.

충분하며, 그리고 많은 준비가 필요없는 단순한 복무를 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봉족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이 당번기간이라 하더라도 군영에 소속되어 전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적어도 농번기를 피해서 복무가 가능한 병종이라는 것이다. 즉 군 복무로 인해 당장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원이거나 근무로 인해 생계를 돌 볼 수 없는 병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군으로서 각 진에 편성된 진속군은 1, 2결 이하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봉족 1호를 주고 3, 4결 이상은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데, 같은 지방군인 진속군은 당번 복무기간에 상시 근무하는 병종으로 봉족을 주어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수성군은 봉족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황발생시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병종일 수 있다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진속군보다는 생활여건이 괜찮은 인원들이 입속한 것이다.

이는 지방에서 번상 시위하는 중앙군에게도 많은 봉족을 붙여주어야 하는 실정에서 진군과 수성군 같은 지방군에게는 되도록 봉족을 부여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봉족을 붙여주려는 정책으로도 보인다.

수성군의 봉족지급에 관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세조 12년(1466) 병조판서 김질을 하삼도의 군적사(軍籍使)로 하면서 군적사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수성군의 봉족 규정에 작은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된다.

3보(保)가 1보를 받드는 자가 있고, 갑사(甲山) 2보를 받드는 자가 있으며,

【기병(騎兵)·정병(正兵)·취라치(吹螺赤)·시파치(時波赤)이다. 제주(濟州)에서 서울에 머무는 자제(子弟)도 같다】 1보가 1보를 받드는 자가 있고 【파적위(破敵衛)의 보병(步兵)·정병(正兵)·태평소(太平簫)·기선군(騎船軍)·진군(鎭軍)이다. 제주의 좌우위 방호군(左右衛防護軍)·진무(鎭撫)·천호(千戶)·백호(百戶)·수성군(守城軍)·4문직(四門直) 등과 기병(騎兵)·수전군(水戰

軍)·방수군(舫水軍)도 같다.】 독보자(獨保者)가 있다. 【봉수군(烽燧軍)·방위
섭육십(防衛攝六十)·차비 진군(差備鎭軍)이다. 제주 좌우위 방호군(左右衛防
護軍)·수성군(守城軍)·4문직(四門直) 등 보병(步兵)도 같다.】⁶¹⁾

세조 10년(1464)에 보법이 시행되면서 군정 2정이 1보가 되고, 토지 5결은 1보에 준하도록 하면서, 비록 제주지역이긴 하지만 수성군은 1보가 1보를 받드는 자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독보자에도 수성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성군의 봉족은 1보이거나 봉족 없이 군역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조선초기 봉족을 주지 않던 것에서 1보의 보가 지급되기도 하고 봉족이 주어지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으로 봉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것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군적사목이 유지되는 시기는 세조 10년(1464) 수성군을 정병으로 합속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진 이후라는 것을 볼 때, 세조 12년에도 아직 전국적으로 수성군이 완전히 정병으로 합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법은 세조 10년(1464)에 시행되었는데 여기에 정병은 기정병과 보정병으로 구분되어, 기정병은 3보, 보정병은 2보로 하여 통일시켰지만 수성군을 정병으로 합속시키는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수성군이 혼재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수성군에게 보인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수성군은 조선초기 일반 양인농민 계층에서 가계나 무재가 떨어지지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하층 계층이 봉족 없이 입역해야 했고, 복무간 생계도 유지해야 했기에 군 복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했던 병종이었다.

2) 취재와 거관

조선전기 대부분의 병종은 취재(取才)를 통해서 선발하고 복무기간에도 항상 일정 수준의 무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진군

61)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1월 19일 임술.

이나 수성군과 같은 지방군 병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취재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군역에 차정되어 일정기간 복무한 군사들에게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품계(品階)나 관직(官職)을 부여하는 거관(去官)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수성군에게 그런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반면 수성군으로 입역하고 있으면서 상위 병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었다. 즉 수성군으로 입역하고 있는 동안 무재가 뛰어난 자는 취재를 통해 갑사(甲士)⁶²⁾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세종 13년(1431)에 신갑사(新甲士) 취재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방 각 고을의 시위패와 영진 소속인 수성군 및 한량(閑良)으로서 자원하는 자는 매년 춘추에 장전(長箭), 편전(片箭), 기사(騎射), 각기 3시(矢) 씩 시험하여, 모두 9시 속에서 3개 종목으로 입격하는 자를 선발하되 8, 9시를 상등으로 하고 6, 7시를 중등으로 하고 4, 5시를 하등으로 하라 했지만 각 지역마다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병조에서 상신하는 내용이 있다.⁶³⁾ 이는 갑사 군역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성군과 타 병종에게 갑사로 입역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여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수성군에게 갑사인 상급 병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지방군으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거관을 허용하고 있는 타 병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 13년(1431) 1월에 신갑사 취재법이 시행되자 많은 인원들이

62) 갑사는 이성계가 조선 건국 무렵 거느리고 있던 휘하군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병종으로 5~8품의 실직에 배치되고 과전과 녹봉을 받는 직업군인의 일종으로 수성군에서 갑사가 된다는 것은 신분 상승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3)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갑사로 지원하여, 서울로 몰려들면서 취재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사항이 있게 되자 응시하는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먼저 갑사로 입속하기 위한 시취(試取)가 서울에서만 실시되어 폐단이 발생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세종 13년(1431) 3월에 바로 이루어진다. 외방의 수령들이 먼저 각 고을의 시위, 영진에 속해있는 자와 각 고을의 수성군, 한량인으로 자원하는 자들을 매년 봄, 가을에 편전과 기보사(騎步射)를 시험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감사는 도절제사와 같이 부근의 계수관(界首官)⁶⁴)에서 도시(都試)를 실시하여 그 등급과 분수를 기록하여 병조에 이문(移文)하고, 병조에서는 그 등급을 고찰하여 상중하로 구분하여 상이 많은 인원을 갑사 군직(軍職)의 결원에 보충하도록 하였다. 즉 갑사로 지원하는 인원이 서울로 몰려드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지방에서 취재를 하고, 병조로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각 도의 취재인수를 미리 정하여 상등이 아무리 많더라도 만약 정수를 초과하면 이를 감하여 기록하고, 정수에 부족하면 중, 하등으로 그 수효를 충당하여 왔는데, 이제부터는 정수를 없애고 장전, 편전, 각각 3시와 기사 3시, 모두 9시 내에서 세 가지에 입격한 자로서 8, 9시를 상등으로 삼고, 6, 7시를 중등으로 삼으며, 4, 5시를 하등으로 삼아 각기 그 성명 아래에 그 시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는 상대평가 시스템에서 엄격한 절대평가 기준에 의해 시취를 하되 성적순에 의해 갑사 직위에 보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갑사로 입속을 위한 시취에 특정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그 기준을 보면 시위, 영진에 속한 자와 수성군은 종전의 갑사 취재례(取才例)에 입각하여 보사(步射) 1백50보로 하고, 한량은 장전에 있어서는 2백40보로 하되 좌, 우표의

64) 계수관은 고려와 조선초기에 있었던 지방제도의 한 형태로 지방 행정체계상의 한 단위 또는 그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의 중심이 되는 대응을 가리킨다.

거리를 50보로 하고, 편전은 세발을 쏘아 한발을 맞추거나 두발을 쏘아 모두 맞추는 경우에 시취를 허용하도록 하였다.⁶⁵⁾

이러한 조치는 상위 병종으로 입속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취재에 응하는 것을 통제함과 동시에 균형있는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수성군이 한량 중에서 갑사로 입속하기를 원하는 인원이 많았다는 것과 수성군이 봉족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병종이었기에 상급 병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병종들이 일정 기간 근무 후 거관하여 체아직(遞兒職)⁶⁶⁾이나 실직(實職) 등의 관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수성군의 경우 상위 병종에 입속할 기회만을 준 것은 다른 병종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취재에 합격하게 되면 비록 체아직이긴 하지만 직업군인으로서 관록(官祿)을 받게 됨과 아울러 무관으로 진출하여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과거를 치루지 않고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으로 이해한다면 수성군이 균역을 치르는데 대한 상응한 대우를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종 2년(1452)에 합포진의 군사 2백인이 진에 속한 군사들이 복무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관직에 서용되지 못하고 갑사로 취재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것도 노비와 토전을 한정시키는 법에 구애되어 보직된 사람은 백에 1, 2명도 없는 이 제도에 대해 부당함을 상언하자 조정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다.⁶⁷⁾ 이에 이들 진에 속한 군사들에게도 양계의 군사들과 준한 대우⁶⁸⁾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수성군

65)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3월 8일 임신.

66) 조선시대에 정해진 녹봉이 없이 근무평정에 따라 교체되며 복무기간 동안에만 녹봉을 받는 관직.

67) 『문종실록』 권12, 문종 2년 3월 9일 임신.

68) 『세종실록』 권105, 세종 26년 7월 13일 경신. 세종 26년에 양계지역에 방수하는 군사들은 무방한지 7년 이상이 되면 종9품의 벼슬을 주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는 품계를 한 자급 승진시키고 17년 이상이 된 자는 벼슬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정9

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초기 조정에서는 지방에서 방수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감사로 취재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흥미로운 내용은 북방지역인 함길도에서 한량인으로 향리의 역을 14년에서 15년을 하고나면 거관하도록 하는데 이들에게 정군시위나 수성군이 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⁶⁹⁾ 이를 통해볼 때 함길도 지역에서는 수성군으로 입속하는 것이 하나의 특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성군이 군역으로서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지역의 수령임무를 보좌하여 사령의 임무나 치안유지와 같은 지역 향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직역으로서, 기존의 향리보다는 대우면에서 높은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탓에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당번 근무

수성군의 복무는 조선시대 군사들의 복무방식인 번상(番上)⁷⁰⁾ 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방군의 당번근무는 번상이나 유방(留防)⁷¹⁾ 또는 부방(赴防)⁷²⁾하는 중앙군 병종의 복무방식과 별반

품을 원래 관직이 있는 자는 한 자급을 뛰어 벼슬을 주고 27년 이상 된 자에게는 벼슬하지 않으면 종8품을 제수하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이면 두 자급을 뛰어 올려 벼슬을 준다. 원래 변방의 고을에 살던 사람이면 60세 이상인 자에게는 벼슬하지 않는 자이면 정9품을 제수하고 원래 관직이 있는 사람이면 한 자급을 뛰어 벼슬을 제수하되 모두 산관으로 제수하도록 하였다.

69)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 4월 1일 경자.

70) 지방의 군사가 군역(軍役)을 치르기 위해 번(番)의 차례에 따라 서울로 올라오는 것.

71) 조선시대에 전략상 중요한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여 불시의 변에 대비하게 한 제도로 양계 지방과 개성부를 제외한 전국 각 도의 국방상 요지에는 4여(旅 : 125명)로부터 1여의 군사가 상주하였다. 여기에는 각 도의 정병 가운데 유방을 주임무로 하는 유방정병이나 유방군이 4교대로 부방, 복무하였다. 영진군(營鎭軍)의 후신인 이들은 번상 정병보다 약간 뒤지는 존재였지만, 1보(保)를 지급받는 양인 군사였다.

72) 조선시대에 다른 지방의 병사가 변경의 국경지대에서 방위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다를 것이 없었지만, 차이점은 중앙군 병종들은 번 근무 횟수가 중앙에서 통제되어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반면, 지방군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개인마다 번 근무 횟수를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영과 제진에서 수성군은 지역에 따라 2번 또는 3번으로 복무하였는데, 동일지역에서도 개인에 따라서 2번, 또는 3번으로 나뉘어 복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번 횟수가 중앙에서 지정되었는지 또는 해당 지역의 수령이나, 도절제사와 첨절제사의 권한으로 결정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행정구역에서 복무한 수성군의 경우 문종 1년(1451), 의정부의 정문에 의거 병조에서 경상도 남해현 성현의 수어군의 수가 3백 명 뿐으로 2번으로 나누어 서로 교체하므로, 괴로움이 다른 곳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니 추가로 군정을 추쇄하여 4백 명으로 증액하여, 진도의 수성군의 예에 따라 4번으로 나누어 서로 교체하며, 방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별로 상황을 고려하여 번의 횟수를 조정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⁷³⁾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번의 횟수를 조정한 사례이다. 동일하게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번 근무 횟수를 조정한 사례는 황해도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단종 1년(1453), 병조에서 황해도 지역의 실농을 이유로 구황대책을 아뢰면서 수성군의 번의 횟수를 현재의 2번 또는 3번 복무에서 3번 또는 4번으로 조정하여 주도록 상신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황해도는 금년에 실농(失農)하여 구황(救荒)하는 일이 가장 급하니, 도내(道內) 여러 포(浦)의 선군(船軍)과 경기우도(京畿右道) 교동(喬桐) 소속의 선군과, 여러 진(鎭)의 진군(鎭軍)과 수성군(守城軍) 등은, 청컨대 전례(前例)에 의하여 명년 7월까지 기한하여 본시 2번(番)으로 나눈 사람은 3번으로 나누고, 3번으로

성종 때부터 실시하였으며, 무과 출신으로서 60세가 지난 자, 양친이 80세 이상인 자, 남한산성 근무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북 국경지대의 변경과 해안에 한 번씩 부방하였다.

73) 『문종실록』 권7, 문종 1년 4월 19일 정해.

나눈 사람은 4번으로 나누어 방수(防戍)하게 하고, ...(중략)...하니, 그대로 따랐다.”⁷⁴⁾

여기서 보면 동일한 지역에서도 2번과 3번으로 번의 횟수가 적용되는 것이 상이한데, 이것이 각개 군사에게 상이하게 적용되었는지, 또는 지방군 병종별로,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 수령이 지방군의 당번 근무주기를 바꾸어줄 것을 상신하고 있는 사료도 관찰된다. 단종 즉위년(1452), 황해도 지역에서는 황해도 관찰사가 구황대책을 아뢰는 과정에서 영과 제진의 진군, 수성군, 방패의 번 근무횟수를 명년 가을까지 한하여, 2번으로 하던 것은 3번으로, 3번으로 하던 것은 4번으로 나누도록 조정을 건의하고 있다.⁷⁵⁾ 또한 세조 1년(1455)에도 충청도 관찰사가 포구의 당번 선군과 영진의 수성군, 방패군, 유방군은 내년 보리가 익을 때까지를 기한하여, 4개 번으로 나누고 향교의 생도는 3개 번으로 나누어 주도록 상신하고 있다.⁷⁶⁾

이를 종합해볼 때 병조에서 특정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번의 횟수와 시기를 조정 건의하기도 하고, 지역의 수령이나 군 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성군의 번 근무횟수 조정을 건의하기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역 수령이 당번 근무방법 조정을 건의하거나, 조정에서 건의하거나 간에 이는 왕의 결심을 받아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번의 횟수가 적용되는 기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하여 번의 적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는 영진에 속해있는 진군과 방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볼 때 지방군의 경우 지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번 근무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74) 『단종실록』 권7, 단종 1년 9월 14일 정묘.

75) 『단종실록』 권3, 단종 즉위년 윤9월 12일 신미.

76)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8월 6일 기유.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오던 수성군의 번 근무횟수는 세조대에 들어와서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게 된다.

병조(兵曹)에서 충청·전라·경상도 도순찰사(忠淸全羅慶尙道都巡察使)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좌도 내상(左道內廂)의 영속 군사(營屬軍士) 내에, 수성군(守城軍) 3백 92명은 2번(番)으로 나누고, …(중략)… 우도 내상(右道內廂)의 영속 군사(營屬軍士) 내에, 수성군 4백 44명은 2번으로 나누고, …(중략)… 제도(諸道) 내상 수성군(內廂守城軍)은 원래 정액(定額)이 없으니, 청컨대 목(牧)·대도호부(大都護府)의 예(例)에 의하여, 3번(番)으로 나누어 매 1번마다 각각 1백 명으로 정액(定額)하고, 방패(防牌)·총통군도 모조리 ‘진군(鎭軍)’이라 일컫도록 아울러 타도(他道)에 유시(諭示)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⁷⁷⁾

세조 8년(1462)에 경상도 좌, 우도 내상(內廂)⁷⁸⁾의 수성군은 2번으로 정하고, 타 지역의 제도(諸道) 내상 수성군은 목과 대도호부의 예에 따라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마다 백 명으로 정액하도록 하면서 왜구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상도 지역은 2번으로 그 외의 하삼도 지역은 3번으로 일괄 적용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수성군은 지방에 입역하는 병종이므로 2~3번이 기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의 양인농민이 입속하는 병종이었던 탓에 농번기와 농한기를 고려하였고, 지방군에 복무하는 군정이 적었기 때문에 복무주기와 교대주기를 짧게 하여 한번기간에 군 복무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여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훈련과 습진

수성군도 조선초기 국방력의 일부로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훈련과 주기적인 습진이 필요하였다. 수성군이 적정 수준의 무

77) 『세조실록』 권28, 세조 8년 7월 11일 갑진.

78) 각도 도절제사(都節制使)의 군영(軍營).

비를 갖추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때는 태종 18년(1418)이다. 함길도 도 관찰사 유사눌이 병종별로 무비를 연습할 것을 주장하면서 수성군도 번상하여 시위하는 과정에서 편전 10매와 통아(筒兒)⁷⁹⁾를 가지고 가게 하여 점고(點考)할 때 아울러 기재하여 전보(傳報)하고, 병조에서 점병(點兵)할 때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시험한다면 몇 년이 가지 않아서 편전을 모두 잘 쏘게 될 것이라고 하며, 각진의 군관과 각 고을 수성군, 각포(各浦)의 기선사관을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습시키자고 하였다. 그리고 왕이 이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점병 과정을 통해 수성군에게도 적정 수준의 무비를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⁰⁾

수성군이 편전을 능숙하게 사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진과 각 고을에 소속된 수성군은 해당 지역의 진장과 수령의 책임 하에 무비를 갖추기 위한 훈련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술을 연마시키기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 내용은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볼 때 수성군과 지방군들은 점고의 과정에 대비해서 스스로 궁술이나 검술 등을 숙달하였거나, 훈련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취재를 통해 상위병종인 갑사로 진출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를 원하는 인원들은 이에 합격하기 위해 장전, 편전, 기사 등의 취재과목을 연마하였을 것이다. 반면 상위 병종인 갑사로 입속하는 데 관심이 없는 인원들은 굳이 무비를 연마하지 않아도, 수성군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무비를 단련하는데 소홀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성군에게 진법훈련을 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세종 3년(1421), 병조에서 각 도의 절제사에게 명하여 농한기에 별패와 시위, 영과 진에 속한 수성군 등을 각기 부근에 모아서 수령 중에 진

79) 짧은 화살을 쏘 때에 살을 담아 활의 시위에 메어 쏘는 가느다란 나무통으로 살은 이 통 속을 지나고 통은 앞에 떨어진다.

80)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법에 밝고 익숙한 자로써 차사원(差使員)⁸¹⁾을 삼고, 품관을 뽑아 훈도관(訓導官)을 삼아서 진법을 미리 연습하게 하고 절제사가 돌아다니면서 검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열(大閱)할 때 검열한 군사 중에서 만약 영을 범한 자가 있으면 도절제사와 차사원, 훈도관 등을 모두 형율의 조문에 따라 죄에 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⁸²⁾ 즉 지방의 군사들을 도 단위로 도절제사 책임하에 진법훈련을 담당할 책임 관원과 교관을 운영하여 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의 군사력이라 할 수 있는 하번 군사와 영진군, 수성군이 모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30년(1448)에는 진도(陣圖)와 진설(陣說)을 인쇄하여 각도에 나누어 주어서 익히게 하고,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과 각진(各鎭)에서 당번 군사(當番軍士)로 매월 세 번씩 진법을 익히게 하며, 또 봄과 가을에 각기 한 차례씩 도회소(都會所)에 모여서 3일 동안 익히게 한 후, 도절제사가 그 진법을 익힌 일시(日時) 및 교습(敎習)의 능부(能否)를 살펴서, 매양 세초(歲抄)에 병조로 보고토록 하는 체계를 갖추었다.⁸³⁾

그러나 도회소에 모여서 진법을 익히도록 하는데 따른 폐단이 있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방침을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단종 2년(1454),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의정부에서 상서한 내용을 보면 각 읍 단위로 하번군사와 영진군, 수성군을 통합하여 훈련토록 하고 있다.

“제도(諸道)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가 도회관(都會官)을 정하여 부근의 제읍(諸邑)을 적당히 소속시켜, 매양 농한기(農閒期)마다 군사를 불러 모아 진법(陣法)을 연습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식(糧食)을 싸 가지고 왕래하는 폐단이 있사오니, 청컨대 금후로는 도회(都會)를 혁파하여 없애고 각각

81) 조선시대 각종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임시로 차출, 임명되는 관원.

82)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83)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 10월 28일 신사.

그 읍(邑)에서 매년 2월 초 2일과 10월 초 2일에 경내(境內)의 하번 군사(下番軍士)와 영진군(營鎭軍)·수성군(守城軍)을 징집하여, 진서(陣書)에 능통한 자를 택하여 장수(將帥)와 훈도(訓導)를 삼아 수령(守令)이 그 연습하는 것을 친히 감독하게 하고...(후략)...⁸⁴⁾

이를 보면 세종 3년(1421)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진법훈련을 매년 2월 초와 10월 초 2일에 연 2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정착시키고, 한 장소에 모여서 진법훈련을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읍에서 진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회를 없애고 제읍 단위로 년 2회, 자체적으로 수령이 진서에 능통한 자를 정하여 장수와 훈도를 삼아 연습하도록 하고 수령이 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진서만을 이용하여 교습시키면 형명(形名)⁸⁵⁾을 갖추기도 어려울 뿐 더러 군사들도 부족하니 진서를 간략하게 초하여 인쇄하여 나눠주게 하고, 도절제사로 하여금 각 지역을 순행하면서 검찰하게 하거나, 사람을 보내어 진법을 연습시킨 일시와 교습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 이후 실시되고 있는 지방군의 진법훈련의 책임이 도절제사에서 각 고을의 수령으로 전환되면서, 각 고을 단위로 실시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훈련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진서를 인쇄해서 나눠주고 도절제사가 감독하는 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세조 1년(1455), 각도의 내지에도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익에 분속시키는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습진체제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2월 18일과 10월 18일에 중익(中翼)을 모아 습진(習陣)하며, 겸하여서 의갑(衣甲)을 점열(點閱)하고, 11월 22일과 정월 22일에는 각각 그 익(翼)에서

84)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3월 10일 신유.

85) 기(旗)와 북으로써 군대의 여러 가지 행동을 호령하는 신호법으로 기정(旗旌)을 형이라 하고 쟁고(鐙鼓)를 명이라고 함.

수관(首官) 이 되어 습진합니다.⁸⁶⁾

이는 조선전기의 새로운 국방체제인 진관체제로 변화를 꾀하면서, 북방지역의 군익도체제를 남방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단위 습진훈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다. 각 거진에는 좌익, 중익, 우익을 두되 중익의 지휘관이 군적작성, 번상, 습진, 취재를 총괄하도록 하였는데, 각 익에 속한 군사들의 진법훈련의 책임은 각 익에 위임하여 11월과 정월 22일에 시행하고, 1년에 두차례 2월 18일과 10월 18일에 중익에 모아 습진훈련을 시행하면서 의갑의 점열도 병행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⁸⁷⁾

세조 4년(1458), 진관체제로 전환된 뒤 병조에서 각 도 거진의 습진과 관련된 사목을 올리면서 “제도의 중익, 좌익, 우익을 혁파하고 거진을 설치하였는데, 그 습진을 예전 기일인 정월 22일, 11월 22일에 하고 있으나, 제도 도절제사로 하여금 농한기인 정월, 2월이나 10월, 11월 중에 날을 정하여 제진에 이문하고, 소속한 제읍에 전하여, 습진을 한 곳에 불러모아 하되, 제진이 또한 반드시 같은 날에 습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제진에서 한 곳의 마을에 모아 습진을 하되, 습진의 날짜는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융통성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습진체제를 제진단위로 하도록 하고, 습진의 날짜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거진 단위의 방수체제 하에서도 제진 단위로 훈련을 하여 한 장소에서 거진 단위로 습진훈련을 할 경우의 폐단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왜구가 수시로 침구하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주진에 모아서 습진을 하지 않도록

86)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11일 계미.

87)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11일 계미. 거진을 설치하면서 거진의 지휘관인 도절제사 예하에 각 익에 지휘관을 두었는데 중익은 병마절제사, 좌, 우익의 지휘관은 병마단련사, 또는 부사, 판관이라 하였으며 제색군사의 번상의 점열과 익속군사의 군안 작성, 습진과 관련된 것은 중익의 지휘관이 총괄하여 도절제사에게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하고, 주진의 장수가 왕래하면서 습진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관체제 하에서 훈련을 명목으로 임의로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주진의 장수가 무릇 습진하고 사변에 응하는 외에 불법으로 소관 군사를 침학하는 자는 중죄로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방의 수령들이 판단하여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라 할 수 있다.⁸⁸⁾

수성군 훈련체제를 종합해보면 무비를 갖추기 위한 훈련체계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고, 점열이나 상급 병종인 갑사로 취재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마하도록 하였으며, 습진도 연 2회 지역 단위 지방군이 습진을 할 때 통합하여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군의 습진을 각 도와 제진에 위임함으로써 훈련의 강도는 높지 않았을 것이다.

나. 군사적 운용

1) 변경지역 방어

지방군은 주로 변경이나 연안지역에서 외침에 대비하여 경계와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수성군도 지방군의 한 병종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였다.⁸⁹⁾ 그러나 수성군은 어느 지역에 편성되었는가에 따라 임무 수행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언급한 바와 같이 수성군이 초기에 편성된 지역은 북방지역과 남방연안 지역으로 대별되고 있는데 북방지역은 부, 목, 군, 현 등의 행정구역에 남방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된 영과 진에 설치되었다. 양 지역에서의 수성군의 임무는 넓은 의미에서 방수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의 차이가 보인다. 먼저 남방지역에서 임무수행을 살펴보면 주로 주요시설이나 지역을 방어하면서 인접한 지역에서 난이 발생하면 이를 증원하여 방어

88)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2월 26일 을묘.

89) 민현구, 전계서, 187~191쪽 참조.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기 영과 진에 설치되었던 수성군이 점차 행정구역에도 설치되었는데 이는 왜구의 침입양상을 분석하여 특정지역에서 왜구가 침입했을 경우, 인접한 진(鎭)의 군사가 적시에 응원하기에 제한되어 해당지역에 수성군을 편성하여 인접지역의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 12년(1430) 행정구역인 순천부⁹⁰⁾에 수성군 3~4명을 편성하고 신백정과 한산인 등을 선발하여 번을 나누어 방수하되 고흥진의 군사가 도달하기 전까지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⁹¹⁾ 세종 21년(1439)에는 진도군⁹²⁾에도 수성군을 120인으로 늘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진도군이 왜구가 침범하고 나가는 길목이므로 기존의 20인의 수성군에서 280인을 늘려 3번으로 나누어 수어토록 하고 있다. 이때 280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 병조에서는 1백인을 증원하여 3번으로 나누되 변란이 있을 때는 2번으로 나누거나 혹은 합번하여 방어를 하고 있다.⁹³⁾ 단종 3년(1435)에는 경상도⁹⁴⁾지역의 포구인 웅천진⁹⁵⁾과 부산포⁹⁶⁾에 수성군을 편성하도록 경상도 관찰사 황수신이 건의하고

90)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순천도호부의 호수가 467호, 인구가 2618명, 군정은 시위군 17명, 수호군 79명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새로이 수성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1)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6월 23일 임진.

92) 진도군은 태종 8년(1408)에 해남현과 합해 해진군으로 하였다가 세종 19년(1437)에 다시 해남현과 진도군으로 분리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해진군의 호수가 122호, 인구는 7백 단(單) 7명, 군정은 시위군 1명, 영진군(營鎭軍) 11명, 선군 164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93)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4월 9일 병술.

94) 경상도 지역의 진(鎭)은 태조 6년(1397)에는 합포, 강주, 영해, 동래 4곳에 설치되었고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울산, 영일, 동래, 영해, 사천으로 변경되면서 그 숫자도 5곳으로 늘어났고, 황수신이 보고할 즈음에는 웅천진이 새로이 언급되고 있음을 볼 때 진(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수시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5)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과거의 지면인 웅신으로 나와있고 웅신의 호수는 63호, 인구가 318명, 인구는 179명이며,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 47명, 영진군(營鎭軍) 120명, 선군(船軍)이 840명으로 나와있다.

96) 부산포는 동래현에 소속된 지역으로 『세종실록지리지』나 기타 사료에서 별도의

있다.⁹⁷⁾

남방 연안지역에서의 수성군은 영과 진에 편성되어 주요 요충지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왜구의 침입경로로 분석된 지역에 추가로 수성군을 편성하여 주로 왜구의 침입에 직접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방지역에서는 수성군이 주로 행정구역인 부, 목, 군, 현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초기에는 각 관아에서 사령이나 관방시설의 경계와 치안 유지를 주로 하면서 유사시 전투에 투입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세종 5년(1423),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경원 경성, 용성 등지에 야인이 들어오면서 노략질이 빈번하므로, 각 동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에 들어오게 한 다음, 당번인 유방군 및 수성군으로 항상 갑주를 착용하여 야인의 침공에 대비하도록 하고 야인들을 선무하도록 하고 있다.⁹⁸⁾ 이를 볼 때, 변방지역의 수성군은 석보와 읍성 등의 관방시설을 경계하고, 야인의 침공이 임박한 경우 이에 대비하는 방어의 임무와 함께 변경지역 야인들의 노략질을 방지하는 치안유지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후 북방지역에 추가로 진이 설치되면서 진에도 수성군이 편성되었다. 진에 편성된 수성군은 주로 관방시설의 경계와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변경지역에서 주로 임무를 수행하던 수성군은 주로 남방지역에서는 진을 중심으로, 북방지역에서는 부, 목, 현, 도호부 등의 행정구역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외적의 침입양상과 전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왜구와 야인의 침입 길목이 되는 지역에 진이 추가 설치되

자료가 없어 동래현의 자료로서 분석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동래현의 호수는 290호, 인구가 1151명, 동평(東平: 동래현의 영현이 설치된지역)의 호수는 108호, 인구가 342명이며,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1명, 진군(鎭軍)이 71명, 선군(船軍)이 130명으로 나타나 있다.

97) 『단종실록』 권14, 단종 3년 윤6월 5일 기유.

98) 『세종실록』 권22, 세종 5년 12월 11일 무오.

거나, 행정구역이 외적의 침입경로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성군이 추가 편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수성군이 편성된 지역을 고찰해볼 때 해당지역의 지방군인 진군이나 방패 등의 병력과 함께 방수의 임무와 주요 관방시설의 경계, 필요시에는 치안유지의 임무 등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2) 대외정벌

수성군도 지방군의 한 병종으로 대마도 정벌과 야인 정벌에 동원되었다. 지방군 체제가 아직 완전하게 정비되기도 전에 왜구의 침범이 잦아지고, 명나라의 일본 침공설이 나도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마도 정벌전이 결정되고 시행되었다. 세종 1년(1419), 이종무를 삼군도체찰사로 삼고, 대마도 정벌을 논의하면서 경상, 전라, 충청의 3도 병선 2백여척과 하번 감사, 별패, 시위패 및 수성군 영속과 재인, 화척, 한량 인민, 향리, 일수양반 중에서 배 타는데 능숙한 군정을 거느려 왜구의 돌아오는 길목을 맞이하고 6월 초 8일에 각도의 병선들을 함께 견내량에 모여서 기다리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있다.⁹⁹⁾

여기서 여러 병종에서 병선에 능숙한 인원이면 제한없이 받아들여 원정군을 편성하겠다는 것인데, 수성군도 여기에 포함되어 원정군의 일원이 되어 참여하게 된다. 이는 아직 군제개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동원 가능한 모든 군정을 지방에서 차출하여 원정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처음 수성군이 전투에 동원된 기록이지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동원되어 전투에 임하였는지, 어떤 전과를 세웠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인이 제한된다.

다음은 북방에서 야인정벌 전투에 동원된 내용으로, 세종 19년(1437),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야인 토벌계획을 상언하는데 8월

99)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14일 무오.

에 군사를 일으켜 9월 이전에 토벌을 끝내어야 장기전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면서, 군사를 조발하는 계책을 조정에 고한다. 이때 4진의 군사와 말이 본디 적어서 보태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도절제사의 영에는 원액 외에 1천명을 더하고 4진에서는 각각 8백명을 더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야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사들에게도 알리고,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실제로는 군졸들을 함길도의 각 고을에서만 징발하되 정군, 선군, 수성군, 반당, 향리, 역자, 공사 복예 및 한량으로서 건장하고 용맹한 자와 말이 실한 것으로 모두 다 조발할 것을 주청하고 있다.

이는 함길도 지역의 군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병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함길도 지역 각 고을의 군정을 동원하여 신속히 야인토벌전을 마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수성군도 동원하자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볼때 함길도 지역의 군정들은 동원되면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이 지역의 수성군도 타 병종과 대동소이한 임무수행태세를 갖추고 있고, 여진정벌전에 다른 병종들과 마찬가지로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⁰⁾

3) 방수(防守)시설 관리와 둔전(屯田)경작

수성군은 변경지역에서 방수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병종이었지만, 순찰임무와 관방시설을 보수하는데 동원되는 등 임무가 점차 확대되었다. 변방지역에서 분쟁이 줄어들게 되자, 점차적으로 수성군의 임무가 관방시설을 규찰하고 보수하는 것과 병행하여, 변방지역 방수군의 군량을 확보하고, 도절제사영과 지방 관아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100) 여진정벌에서는 여진족이 부락단위로 여러 곳에 산재해있고 조선이 군사를 동원하여 야인 정벌을 개시하면, 소식을 듣고 금방 도피해버리거나 유목생활로 말을 잘 다루었으므로 기병위주로 부대를 편성하되 보조적 역할로 보병을 편성하였고, 수성군은 보병 병종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위한 차원에서 둔전이나 영전의 경작에 투입된 사례가 발견된다.

문종 1년(1451), 황해도 도제찰사 정분이 방수대책을 아뢰는 과정에서 황주, 봉산의 군사는 두 고을의 수성군과 아울러서 두 번으로 나누어 방수하게 하며, 무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극성절제사(棘城節制使)로 황주목사를 겸하게 하여, 서흥 이하의 행성과 소보를 규찰하게 하도록 하고,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군인을 각처 석보에 분속시켜서 순행, 점검, 방어 임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극성 근처에 비옥한 땅이 많으니 둔전을 두고 당번한 진군과 수성군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여 군량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⁰¹⁾

이를 볼 때 지방의 요해지는 수성군으로 하여금 당번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주변의 행성과 보를 검찰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였고, 비옥한 땅을 둔전으로 경작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임무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는 황해도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성군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임무를 공통으로 부여하였을 것이다.

세조 6년(1460), 그동안 문란하게 운영되어 오던 제도의 절제사, 처치사, 제 포구의 영전의 액수를 정하도록 하면서, 절제사, 처치사의 영전은 20결로, 첨절제사, 도만호의 영전은 10결로 하되 선군, 수성군을 써서 경작하게 하고 곡수를 갖추어 호조에 이문하여 회계에 기록하여 군관, 반인, 종, 말의 식량을 공급하게 하고 만약 남는 것이 있으면 모두 의창에 들이게 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¹⁰²⁾ 이를 보면 수성군에게 각 영의 소관 영전의 경작임무도 부여하여, 자기가 속해있는 진과 영의 둔전과 절제사와 처치사의 영전을 경작하여 군량을 확보하고 관아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북방과 남방의 연안지역에서 분쟁이 잠잠해지고 긴급한 임무 수요가 없게 되자, 수성군은 제진의 방수 임무 외에도 관

101)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2월 20일 기축.

102) 『세조실록』 권19, 세조 6년 2월 4일 신해.

방시설의 점검 임무와 함께 유사시 각 석보에 분속시켜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지역별 대비태세를 갖추는 임무를 수행하는 병종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는 수성군 편성이 변경지역 중심에서 황해도와 같은 내륙지역까지 편성됨에 따라 그 임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또한 수성군은 둔전과 영전을 경작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임무에도 동원되었는데, 이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기보다는 전투지원이나 전투 근무지원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병종으로 점차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수성군에게 부가적인 임무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첫째는 구마군의 역할이다. 세종 20년(1438), 의정부에서 각 도 목장의 말을 점열할 때 구마군으로 각 포의 당령(當領)선군¹⁰³)을 쓰고, 혹 부족하게 되면 영진속과 수성군을 쓰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연호군(煙戶軍)¹⁰⁴)을 적당히 징발하여 쓰게 하도록 주청하고 있다.¹⁰⁵ 여기서 수성군을 각 해당지역 목장의 말을 점열할 때 동원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확보하는데도 운용하였다. 세종 15년(1433), 영북진에서는 정군과 수성군, 각 고을의 차비인호(差備人戶)¹⁰⁶)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은 면제하고 해청을 잡게하였는데¹⁰⁷) 여기서 해청은 우리나라에서 산출되었던 사냥용 매인데, 수성군은 해청을 잡는데도 동원되었다.

4) 지휘체계

먼저 수성군이라는 병종의 군사단위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103) 번(番)을 당한 선군(船軍).

104) 고려 후기에 이르러 기존의 정규군만으로는 잦은 왜구의 침입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임시로 지방 농민을 징발하여 왜적에 대비하였던 군사조직이었다.

105) 『세종실록』 권82, 세종 20년 8월 3일 을묘.

106)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하인의 가구.

107) 『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 10월 29일 무인.

사료를 찾기 힘든데, 일반적으로 지방에 복무하는 시위패가 수성군으로 정속되었으므로 시위패와 유사하였을 것이다.¹⁰⁸⁾ 그리고 평안도와 함길도 지역에서는 정군의 지휘체계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차후 영진군을 포함한 수성군도 정병에 합속되었는데, 정병의 지휘체계는 매 25인마다 대정 1인을 두고, 1백25인마다 여수 1인을 두게 하는 지휘시스템이었다. 정병으로 완전히 합속되어 수성군이 완전 소멸될 때까지는 정병의 지휘체계로 수성군의 지휘도 이루어졌을 것이다.¹⁰⁹⁾

수성군을 포함한 조선초기 지방군 지휘체계를 살펴보려면, 고려말 지방군 지휘체제부터 고찰해보아야 한다. 이는 조선초기 지방군 지휘체계는 고려의 유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지방군인 주현군의 평시 지휘는 주현군이 편성된 해당 지역의 수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시에는 중앙에서 지휘관이 파견되어 중앙에서 편성된 중앙군과 지방군을 통합하여 지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¹¹⁰⁾

고려후기로 접어들어 각 도를 단위로 하는 행정체계가 정립되면서, 군사관계 분야는 도순문사가 파견되었고, 민사관계는 안렴사가 파견되어 이를 관할하도록 체제가 갖추어져갔다. 이는 충정왕대를 전후하여 제도화되었던 것으로 도순문사는 군사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상시 임무를 수행하는 전임관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순문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였다.¹¹¹⁾ 우왕 때에는 각 도마다 원수가 있어 왜구의 침입이 있을 때는 각도의 병사를 통할하여 전투에 임하도록 하였다.¹¹²⁾ 공양왕 1년(1389)에 도순문사를 도절제사로, 원수를 절제사로

108)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6월 8일 계유.

109) 『세조실록』 권18, 세조 5년 11월 1일 기묘.

110) 민현구, 전개서, 178~179쪽 참조.

111) 장병인, 「조선초기의 병마절도사」, 『한국학보』 34, 1984. 163쪽. 우왕 14년 6월에 이르면 지방에 파견되던 여러 가지 이름의 사명을 정파하여, 1도마다 1인씩의 민정장관, 군정장관을 두어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112) 『고려사 「병지」 “우왕조”

개칭하였고, 또 이때까지 경관으로 구전 임명하여 운영하던 것을 제수하여 임명함으로써, 각 도별로 전임의 도절제사가 파견되어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¹¹³⁾ 이는 조선이 개국하면서 그대로 이어지고 조선초기 지방군 지휘체계의 기초가 된다.

태조 6년(1397), 5월에 군사 단위로서 도는 폐지되고 각 도에 2~4개의 진을 설치하여 첨절제사를 두고 부근에 있는 군과 병마를 통할하여 도관찰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그동안 군을 관할하던 도절제사는 없애는 조치를 단행하였다.¹¹⁴⁾ 그리고 지역의 주요 요충지에 설치된 진에 편성된 수성군은 제진의 장에 의해 직접 지휘받게 되었다. 이는 고려말에 전임도절제사를 파견하여 지방군의 지휘를 하도록 한 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며, 이때 진 단위에 첨절제사를 파견한 것은 인접한 지역의 군사력 통합 운영까지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태조 7년(1409), 10월에 도절제사를 복설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때 도절제사에게 직할병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절제사의 지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위협에 직접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⁵⁾ 이는 도절제사의 직할병력인 영군이 편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서 고려말에 설치된 전임도절제사가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도절제사의 지휘를 위한 시설이면서

금후로 군사를 동원할 때마다 각도의 도순문사(都巡問使)로 하여금 원수(元帥)를 겸직하게 군목도(軍目道)의 관원은 병마사(兵馬使)와 지병마사(知兵馬使)를 겸직하게 해서, 각 도에서 진작 소속된 품관(品官) 군인을 같이 인솔하여 상경(上京)하도록 하라.

113) 도절제사가 파견되었던 곳은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강릉도, 서해도의 5도였고 녹사를 거느리고 임지에 이르러 소관 도의 군무를 처결하였다. 도절제사는 주, 부의 수령을 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그 예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또 동북면, 서북면의 북방정책은 전통적인 특수성 때문에 도단위 편성에서 누락되었다.

114)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1월 28일 신사. 삼남지역의 도절제사 3명이 왜구가 침입하였을 때 제대로 조치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 3명을 모두 죄 주었다고 하며 이때를 계기로 도절제사 제도가 잠정 미실시되었다.

115) 민현구, 전거서, 183쪽 참조.

군사적 기지인 도절제사영도 이때 만들어졌다. 도절제사영에 편성된 영군 뿐만 아니라 수성군도 도절제사의 직할 병력으로 도절제사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 이로서 각 진에 설치된 수성군은 제진의 장에 의해 지휘되고 도절제사영에 설치된 수성군은 도절제사에 의해 지휘되는 이중의 지휘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진관체제에 의한 지휘체제¹¹⁶⁾가 구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세조 1년(1455)에 내지에 거진을 설치하고, 거진에 인근의 여러 고을을 중익, 좌익, 우익으로 편성하여 분속시키고, 중익 수령의 직함은 중익 병마절제사로 하되, 당상관이 아니면 첨절제사라 하고 나머지의 좌우익 수령의 직함은 병마단련사, 부사, 판관이라 일컫는 시스템이 처음 자리를 잡았다. 이때 모든 군사와 향리, 수성군, 잡색군 등도 모두 익에 속하게 하였다.¹¹⁷⁾ 따라서 수성군도 진관체제하에서 익에 속하여 병마절제사나 병마단련사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거진과 각 익의 사이의 지휘관계는 중익인 병마절제사가 도절제사의 호령을 듣고, 모든 익은 중익 병마절제사의 호령을 듣되, 만약 여러 진에 사변이 있을 경우 그 익의 군병을 징집하여, 절제사에게 보고하고 시기에 맞추어 사변에 대응하도록 하였다.¹¹⁸⁾ 이로서 이중의 지휘체계에 있던 수성군은 도절제사-병마절제사-절제사로 이어지는 지휘체통의 틀속에서 지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조 3년(1457)에 거진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 관방체제는 주진을 중심으로 하는 진관체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방군의 지휘체계는 맨 위 주진에 최고지휘관인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는 우후가 있고, 다음으로 훈련과 방어의 중심이 되는 거진의

116) 진관체제에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주진에 있으면서 도내의 지방군에 대한 군사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그 아래의 거진에는 지역의 수령이 절제사, 첨절제사 등을 겸하면서 군사조직을 장악하였고 말단의 진에는 군수, 현령, 현감 등이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등을 겸했고 특수지역에는 만호를 두고 소속된 지방군을 지휘하였다.

117)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11일 계미.

118)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11일 계미.

병마절도사, 병마첨절제사 및 수군절제사, 수군첨절제사가 있으며, 그 밑의 제진에는 병마동첨절제사, 병마절제도위 및 수군만호 등으로 구성되었다.¹¹⁹⁾ 그러나 이러한 지휘관 편성은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다.¹²⁰⁾

그러나 전시상황과 같은 경우 단일 지역의 지방군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되므로, 여러 지역의 지방군과 중앙에서 파견되는 병력을 통합하여 조정에서 파견된 단일 지휘관을 중심으로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¹²¹⁾은 고려시대와 유사하였다. 다만 북방지역에서 여진족의 국경지역 침탈에 대한 응징의 성격으로 전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주로 해당지역의 도체찰사를 지휘관으로 하여 지휘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¹²²⁾

119) 서태원, 「조선전기 유사시 지방군의 지휘체계」, 『사학연구』 63, 2001. 46~47쪽 참조

120) 『경국대전』 권4, 병전. 각 도의 군사 지휘체계.

구 분	수성군	시위군
평안도	병사2(영변1, 1명 관찰사 겸임) 우후1(영변1), 평사1(영변)	수사2(관찰사, 영변부사가 겸임) 우후(없음)
영안도	병사3(북청1, 경성1, 1명은 관찰사겸임) 우후1(경성), 평사1(경성)	수사3(관찰사, 북청부사, 경성부사가 겸임)
강원도	병사1(관찰사 겸임), 우후(없음)	수사1(관찰사 겸임). 우후(없음)
황해도	병사1(관찰사 겸임), 우후(없음)	수사1(관찰사 겸임), 우후(없음)
전라도	병사2(강진1, 1명은 관찰사 겸임) 우후1(강진)	수사3(순천1, 해남1, 1명 관찰사 겸임)
경상도	병사3(울산1, 창원1, 1명 관찰사 겸임) 우후2((울산1, 창원1)	수사3(동래1, 거제1, 1명 관찰사 겸임), 우후2(동래1, 거제1)
충청도	병사2(해미1, 1명 관찰사겸임) 우후1(해미)	수사2(보령1, 1명 관찰사 겸임) 우후1(보령)
경기도	병사1(관찰사가 겸임), 우후(없음)	수사2(남양, 화양만1, 1명 관찰사 겸임), 우후(없음)

121) 김일환, 「세종대 대마도정벌의 군사적 전개과정」,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 2012. 104쪽 참조. 세종 1년(1419)에 실시된 대마도 정벌은 조정에서 이종무를 삼군도체찰사 및 중군도절제사로 임명하여 원정군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122) 강성문, 「조선시대 여진정벌에 관한 연구」, 『군사』 18, 1989, 48~55쪽 참조. 태종 10년(1410)에는 길주도찰리사 조연, 세종 15년(1433)에는 평안도도체찰사 최윤덕, 세종 19년(1437)에는 평안도도체찰사 이천, 세조 6년(1460)에는 함길도도체찰사 신숙주가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등 양계지역의 군사지휘관으로 지휘부를 구성하여 여진정벌을 실시하였다.

수성군은 지방군의 한 병종으로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수성군 단독의 지휘체계는 소수 병력의 지휘구조속에서 운영되었고, 대규모 병력의 일부로 전투임무를 수행할 때는 자체 지휘구조를 유지한 가운데, 조정에서 구성해주는 지휘부 통제를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4. 맺음말

조선초기 지방군의 한 병종인 수성군은 지방의 관방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태조 6년(1397)의 설진조치로 풍해도를 포함한 하삼도 지역에 진이 설치되면서 각 진의 진수군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 의하면 17개의 진으로 확대된 진에서 전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의 각 진에 수성군이 편성되었고, 북방의 함길도와 평안도 지역에서는 부, 목, 군, 현 등의 행정구역에 수성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후에는 왜적의 침입 경로에 있는 남방의 하삼도 지역에는 군, 현 지역에도 수성군이 편성되었고, 북방에서도 추가로 진이 설치되면서 진 단위에 수성군이 편성되었다.

세조 1년(1455)부터 남방지역에도 군익도 체제가 확대되면서 수성군은 주로 중익에 편성되었고, 세조 3년(1457), 진관체제가 정비되면서는 주로 제진에 지방군의 일부로서 편성되었다. 세조 10년(1464)에 지방군을 모두 정병으로 통합하면서 수성군은 정병으로 통합되었고 이때 정병이 중앙으로 변상하는 정병과 지방에 유방하는 정병으로 구분되면서 수성군은 유방정병으로 구분되었다.

수성군은 주로 지방의 양인 농민이 입속한 병종이다. 고려말 조선 초기 각 지방에서 서울로 변상하여 시위하는 시위패들이 사병혁파 이

후 시위와 숙위를 전담하는 병종이 생기면서 번상 소요가 줄어들자 지방의 선군이나, 진속군, 수성군으로 입속하게 되고 수성군으로의 정속이 본격화되었다. 수성군에 입속하는 인원들은 무재나 가계분야에 있어 다른 병종에 비해 조금은 수준이 낮은 인원들이 입속한 것으로 보인다.

수성군으로 입속하기 위한 시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4년(1404)에 정립된 봉족관련 규정에서 수성군은 3, 4결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입속하였으며 5, 6결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입속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봉족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수성군은 복무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보병 병종이었고, 농한기에 주로 소집되거나, 당번근무 중이라도 농사 등의 생업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군사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군역의 일정기간을 마치면 거관하여 품계를 받거나, 실적을 부여받기도 하였으나 수성군은 이러한 거관제도가 없었으며, 다만 상위 병종인 갑사로 입속할 수 있도록 갑사로의 취재는 허용되었다. 처음에는 취재가 서울에서만 실시되었으나 이에 따른 폐단이 많아 외방에서 일단 취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병조에서 관리하면서 갑사 군직에서 소요가 발생하면 성적순으로 배정하였다.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시취에 응하면서 취재의 소요가 많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들만 시취에 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통과한 인원에게만 시취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수성군은 조선시대 군사들의 복무방식인 번상제도 하에서 복무하였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2번 또는 3번으로 복무하였으며, 지역별로 구황대책 등으로 번 근무횟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 지방의 수령이나 병조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토록 건의하여 시행하였다.

수성군이 전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시부터 준비해야 했던 훈련

과 습진의 체계를 보면, 별도로 무비를 연마하기 위한 훈련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습진훈련은 세종 3년(1421)부터 정립되기 시작했다. 습진훈련은 농번기를 피해 정월 22일과 11월 22일에 하던 것을 세조 3년(1457)에 진관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훈련시기를 각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습진훈련을 한 지역에서 모아서 하던 것을 제진의 장에게 위임하고 지역의 수령들이 훈련 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되도록 한 곳에 모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

수성군은 지방군의 한 병종으로 주로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변경지역 방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무가 주어졌으나, 지역마다 소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어 관방시설 경계에 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에 편성된 수성군은 해당 지역의 치안유지나 행정기관의 사령임무를 수행하다 유사시에는 동원되어 전투임무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평시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의 수성군은 각 처의 행성과 소보를 규찰하고, 유사시에는 각 처의 석보에 분속하여 순행하거나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성군은 둔전과 각 영에 속해있는 영전을 경작하여 군량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인 각 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세종 20년(1438)에는 의정부에서 각 도 목장의 말을 점열할 때 구마군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지방의 진상품을 마련하는데 동원되기도 하였다.

수성군의 지휘체계는 지방군의 타 병종의 지휘구조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의 지방군 편성의 특성에 따라 남방지역은 시위패, 북방지역은 정군의 지휘구조가 수성군에게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수성군의 상급 지휘체계는 설진조치로 진이 설치되면서 진에 편성된 수성군은 진의 지휘관인 병마첨절제사의 지휘를, 도절제사의 영에 편성된 수성군은 도절제사의 지휘를 받았다. 북방지역의 행정구역

에 편성된 수성군은 행정구역의 수령에 의해 지휘받았다.

진관체제가 정립되기 전 군익도체제에서는 중익의 병마절제사에 의해 지휘되었고, 진관체제가 정립되면서는 진관체제의 틀 안에서 지휘받았다. 수성군이 지방군의 일부로 대마도 정벌과 야인정벌전에 동원되었을 때는 조정에서 구성한 통합지휘부나 해당지역의 군 책임자를 지휘관으로 하여 구성된 지휘체제 아래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성군의 입역기준이나 시취, 거관 등의 운용시스템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제한사항은 많았지만 수성군의 많은 부분이 밝혀졌고, 수성군이 변방지역의 방수 임무와 대외정벌에 투입되는 등 조선초기 국방력의 일부를 담당한 지방군의 주요 병종임에는 틀림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추가적인 사료의 발굴을 통해 더 많은 부분이 밝혀진다면 수성군의 구체적 운용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18. 7. 8, 심사수정일 : 2018. 8. 15, 게재확정일 : 2018. 8. 16)

주제어 : 지방군, 수성군, 변경지역 방어, 관방시설, 둔전경영, 지휘체계

<참 고 문 헌>

<원 전>

- 『조선왕조실록』
- 『경국대전』
- 『고려사』
- 『고려사절요』

<논 문>

- 강성문, 「조선시대 여진정벌에 관한 연구」, 『군사』 18호, 1989.
- 강은경, 「조선초 무수전패의 성격」, 『동방학지』 79, 1993.
- 권영국, 「고려말 지방군제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1, 1994.
- 김광철, 「조선전기 양인농민의 군역; 정병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3, 1979.
- 김석형, 「조선초기 국역편성의 기저」, 『진단학보』 14, 1941.
- 김일환, 「세종대 대마도정벌의 군사적 전개과정」,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 2012.
<http://uci.or.kr/G704-SER000013584.2012.31.2.004>
- 김종수, 「16세기 감사의 소멸과 정병입역의 변화」, 『국사관논총』 32, 1992.
- 김종수, 「고려·조선초기의 부병」, 『역사교육』 69, 1999.
- 김종수, 「조선초기 부병제의 개편」, 『역사교육』 77, 2001.
- 민현구, 「오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의 성립」, 『한국군제사』, 1968.
- 민현구, 「조선초기의 사병」, 『동양학』 14, 1984.
-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의 진관체제로의 개편」, 『조선초기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 서태원, 「조선전기 유사시 지방군의 지휘체계: 중앙군사지휘관의 파견과 관련하여」, 『사학연구』 63, 2001.
- 오종록, 「고려말의 도순문사」, 『진단학보』 62, 1986.
- 오종록, 「조선초기의 변진방위와 병마첨사·만호」, 『역사학보』 123, 1989.
- 오종록,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체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 오종록, 「조선초기 정병의 군역」, 『한국사학보』 1, 1996.
- 오종록, 「조선초기의 국방관」, 『진단학보』 86, 1998.
- 윤훈표, 「조선초기 경군의 편성에 관한 연구」, 『서울학 연구』 2, 1994.
- 윤훈표, 「조선초기 별시위 연구」, 『국사관 논총』 43, 1993.

- 윤훈표, 「조선초기 갑사의 통솔체계」, 『역사와 실학』 17·18, 2000.
- 윤훈표, 「조선 개국초 지방군 운용체계의 구축과 그 개편」, 『역사와 실학』 61, 2016.
<http://uci.or.kr/G704-002032.2016..61.007>.
- 이규철,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역사와 현실』 74, 2009.
<http://uci.or.kr/G704-000054.2009..74.004>
- 이재룡, 「조선초기의 봉족제」, 『역사학연구』 2, 1964.
- 이재룡, 「조선초기의 수군」, 『한국사연구』 5, 1970.
- 이현수, 「조선초기 군정의 정액화 과정과 군액추이」, 『조선시대사학보』 26, 2003.
<http://uci.or.kr/G704-000303.2003..26.001>.
- 이현수, 『조선초기 군역제도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이흥두, 「조선전기의 잡색군」, 『군사』 39, 1999.
- 임용한, 「고려·조선전기의 부병제」, 『역사문화연구』 40, 2011.
<http://uci.or.kr/G704-000940.2011..40.003>
- 장병인, 「조선초기의 병마절도사」, 『한국학보』 34, 1984.
- 장창하, 『세종대의 여진정벌에 관한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정청주, 『조선초기의 별시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차문섭, 「선초의 갑사에 대하여」, 『사충』 4, 1959.
- 차문섭, 「조선초기의 국방체제」, 『동양학』 14, 1984.
- 천관우, 「朝鮮初期 五衛의 兵種」, 『사학연구』 18, 1964.
- 천관우, 「朝鮮初期 五衛의 形成」, 『역사학보』 17·18호, 1962.
- 천관우, 「오위와 조선초기의 국방체제」, 『이상박사화갑기념논총』, 1979.
- 최종대, 『조선시대의 병력충원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홍영의, 「고려말 군제개편안의 기본방향과 성격」, 『군사』 45, 2005.
<http://uci.or.kr/G704-001528.2002..45.001>

<저서>

- 민현구 외,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오종록, 「여말선초 지방군제 연구」, 국학자료원, 2014.
- 윤훈표, 『여말선초 군제개혁 연구』, 혜안, 2000.
- 윤훈표 외, 『한국군사사 : 조선전기편』, 육군군사연구소, 2012.
-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Abstract>

The Suseong-gun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Kim, Jeong-woong

Suseong-gun, a local military unit in the early Joseon Period, was established in the sixth year of King Taejo'(1397), and was originally formed as defending army in the southern area with Poonghado. at the stronghold area. According to the "Sejong Sillogjiriji" Suseong-gun was established in the northern of Hamgildo and Pyeongando reg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Later Suseong-gun was organized into the southern area of administrative district, and in the northern area of stronghold which was newly made.

The 10th year of King Sejo(1464), until it was integrated into Jeongbyeong, Suseong-gun contributed much to the defense of the periphery of the early Joseon Dynasty. which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military power.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s private soldier was dismissed, It seems like that a small number of soldiers who were Siwipae(soldier who were in the military service obligatorily), was transferred into Suseong-gun, while the conscription system was being reorganized. The farmers, who are ordinary, seem to have been entered military service of Suseong-gun and they ware slightly lower level of the family living and physical strength.

During the Joseon Dynasty, after the people finish the military service, they were given degree of official rank or were given public service position. However, Suseong-gun did not have such system, and was allowed to enter the superior level of army which were known as Gapsa.

Suseong-gun served under the traditional military service system, which was the service method of the different forces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served two or three times a year depending on the region an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situation. When the number of military service required to be adjusted in the time of famine emergency perio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War suggested and approved by king.

Although Suseong-gun was assigned to perform defending missions in the periphery area, it was believed to have performed maintaining the boundary area and security of fortification, and duty officer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ase of emergency, they were sent on combat missions. During peacetime, they controlled the castle and stone barrage, and in case of emergency, they carried out the duties of going forward, checking and defending strong point. and they also carried out a task of cultivating a farm which was belonging to the military troops and belonging to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support each organization.

During the 20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1438), they were engaged in driving horse when checking and inspecting the military horse by the order of highest government officer.

Suseong-gun did not have a training system to train themselves separately, and battle formation training was carried out on January 22 and November 22 to avoid farming season from the third year of the King Sejong's reign (1421).

Then, it delegated battle formation training to the head of the regional commander and forbidden not to be gathered in one place.

Suseong-gun's command system was activated within the framework of local command systems.

The higher command system of the Suseong-gun which were belonging to the Yeong and Jin was carried out by Dojeoljesa and

Bungmachemjeoljesa, an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e northern region was probably commanded by the leader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Jinggwan system, the Suseong-gun was organized into middle wing, so led by the commander of middle wing Bungmajeoljesa, and after the Jinggwan system was organized, Suseong-gun was controlled in the Jinggwan command system.

Suseong-gun was mobilized like other specialties and branch of arms to punish Dama island and Wild Jurchens in the north, At this time, a separate command line was formed and sent dow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was controlled as part of the local army under such a command chain.

Key words : Local Army, Suseong-gun, Defense of frontier Areas, Defending Facility Management, Cultivating farm(belonging to troops), The Command System